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양승혁 | 베트남 관세관



양승혁
베트남 관세관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1. 베트남 통관환경

(1) 수출입 금지 및 사전 수출입 허가 등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외 무역법(05/2017/QH14), 2018년 5월 15일 부로 시행된 동법 시행령(Dcree 69/2018/ND-CP)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수출입 금지 품목(시행령 부록1), 수출입업자가 지정된 품목(시행령 부록2), 수출입 라이선스가 필요한 품목(시행령 부록3), 또는 특정품목 (시행령

부록4)을 제외한 일반품목을 수출입 할 수 있다. 수출입 금지품목으로는 무기, 탄약, 폭죽, 중고 가전 및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중고 운송 수단 및 부품, 차대번호 수정 또는 디자인이 변형된 각종 차량 및 우측핸들 차량 등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CITES*에 따른 동식물 등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2) 관세율

관세율은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관세율은 (Normal tariffs)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우대관세율의 150%를 부과한다.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특히,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한·ASEAN FTA에 한함)

(3)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세(관세, 수입부가세) 면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세 면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 시행령(Decree No. 134/2016/ND-CP) 제12조를 참고할 수 있다.

동 법령은 수출물품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부분품, 중간재 등이다. 이때 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맡긴 경우에는 직접 수출했다 하더라도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재 다툼이 있다(다만, 해외 임가공 계약에 따른 수출품 제조 업체는 시행령 제10조 임가공 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관세면제를 받은 기업은 추후 세관에 연1회 정기적으로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 생산용 원자재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은 없으나, 수입세를 납부한 원자재 등은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오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허용 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수입자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된 내수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 변경 시점에 세관에 사전신고(반대의 경우도 동일)를 해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완료해야 한다.

(4)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석탄, 금속(비철 금속 포함) 및 금속 Scrap 등 품목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5/2017/ND-CP (122/2016/ND-CP 보충 시행령)」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수출관세는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치의 51% 이상 차지하는 경우 5~20%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가공 수준이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대한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여 해당 자원의 유출을 막고, 가공 수준이 높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국내생산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 제한) 및 가공기법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가 베트남산이 아닌 금속바(황동)를 수입하여 가공후 남은 잔재물

(스크랩)을 한국으로 보내 금속바 형태로 재수입하는 형태의 일시수출 건에서 수출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産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개정을 요구중이다.

※ 베트남 수출세 개황(2019년 12월 현재)

- 석탄, 광물(석재 포함), 원목, 금속(비철금속 포함) 등에 수출세 부과
- 211개 품목(HS code 4자리 기준), 541개 세부품목(HS code 8자리 기준)
- 주요 세율: 철광·구리광(40%), 각종 원목 및 제재목(25%), 금속 스크랩류(15~22%), 석탄(10%)

(5) 수입물품 검사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세관국이 설치되어 있고, 세관국 산하에는 총 160여 개의 세관지국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관세총국”이라고 하며, 지방의 세관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으로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세총국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모든 수출입화물은 수출자/수입자/신고 대행자가 신고한 통관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실물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화물 (Green Channel), 우범

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검사 종류】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전산신고만으로 신고수리 가능)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e-document 세관 제출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 세관 제출
Red Channel		종이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 육류 · 수산물 · 곡류 · 두류 · 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및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6) 주요 통관애로

① 복잡한 통관절차와 모호한 규정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주요 통관애로사항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모호한 규정이다.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령(08/2015/ND-CP, 59/2018/ND-CP), 시행 규칙(38/2015/ TT-BTC, 39/2018/TT-BTC) 규정에 따른 통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각 국가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통관 지연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지역세관의 통관지연 발생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증명서 유효기간인 1년 범위 내의 수입품은 변경된 HS code에 따른 수정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수출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제출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30일,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는 1년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FTA 원산지증명서 부인

FTA 원산지증명서 부인도 발생하는데, 수입자가 C/O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수입자 귀책사유로 부인된 사례도 있으나, 베트남 세관담당자가 다양한 FTA 협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후심사 또는 세관조사 과정에서 HS code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특혜관세 혜택까지 추징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한-베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③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추징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추징에 대한 것도 수출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견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HS code를 수입신고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세평가 및 HS code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 세관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므로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거나, 최초 신고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분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신청하는 HS code 사전확정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보는 주호치민총영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 정보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1) 베트남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오류(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베트남 발급기관(베트남 산업무역부)은 베트남 수출신고서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베트남 세관은 해당 물품이 이미 수출된 경우 수출신고서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 협약 상대국이 주장하는 HS

code의 FTA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변경된 Hs code가 기재된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베트남 관세총국의 Hs code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는 것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2) 수출용 원재료 등 면세범위 축소 경향

베트남은 수출 장려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일반 수출용 원재료 및 해외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관세 및 부가세)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용 원재료를 투입하여 275일 전에 물품을 수출하면 면세를 확정하는 구조였으나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세법」시행령(134/2016/ND-CP, 2016.9.1. 발효)을 개정하여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275일 관세유예 제도를 폐지하였다.

베트남 재무부(관세총국)은 관세유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면세 요건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수확대를 위해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보수적인 유권 해석을 발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품 제조시 일부공정이라도 외주를 줄 경우 직접수출 하더라도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사전 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등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하고 베트남 국내 타법인에 내국수출을

하여 해당 법인이 최종가공을 마치고 수출하는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과세당국의 추징이 현실화 될 경우 확인된 것만 수백억 대에 달하는 세금 부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 관세청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베트남 당국은 내국수출을 통한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 등은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철회(2019.6.25.) 하였으나, 외주가공을 거친 수출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등 면세부인 유권해석은 현재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다툼이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가능한 한 향후 축소가 예상되는 베트남의 일반 면세제도 보다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고 설비 및 기계 통관 요건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중고설비 수입이 제한되나, 제도가공 등 생산활동에 공여되는 HS 84,85류에 해당하는 중고 생산(기술) 라인 및 설비, 기계류에 대해 조건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중고기계 등 수입과 관련하여 총리 결정문이 개정(18/2019/ QD-TTg, 2019. 6.15.시행)되었다.

생산라인이 아닌 일반 기계류(부분품 포함)는 제조연한이 10년 이내여야 하나, 특정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대해서는 15년 이내 또는 20년 이내여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설비류라 하더라도 생산효율성 기준(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 성능을 보유), 에너지 원료 소모율 기준(최소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이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또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국 이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일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히 수출국에서 생산라인 설비 검사 인증서(유효기간 18개월)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설비가 가동중일 때 검사가 진행되어야 함.

최근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업체들이 통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중고설비는 한국공인 검사원(KAIRI)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 중고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에는 베트남에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중고가 아님에도 중고가 의심 된다면 통관을 지연시키고 Under-table Money를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4)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적용

한-아세안 FTA 협정은 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7조에서 원산지 누적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일방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상호 교역시 일반적으로 ATIGA(아세안 국가간 상품교역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한국산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태국 등 타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위 누적조항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누적조항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담당자에 따라 발급을 거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2019.11월 부산) 개최 계기에 열린 아세안 사무국장과의 기업간담회에서 베트남 한인상공인협회(코참)는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ATIGA* 협정에 상호 교차 누적조항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3. 세관 민원 해소방안

(1) 꼼꼼한 사전 확인

베트남은 FDI 유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초의 약속과 다르거나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면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사전에 챙겨야 할 각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입전 또는 투자 전 미리미리 해당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세관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업체보다는 검증된 물류업체를 이용하고 주베트남 대사관(하노이), 관세관이 상주하고 있는 주호치민 총영사관, 한인상공인연합(코참), 코트라(하노이, 다낭, 호치민), 무역협회(호치민), 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 등을 통해 즉시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관 세무조사 사전 대응

세관의 통관후 세무조사는 10영업일(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시하며, 특별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30영업일(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시한다. 필요시 조사연기 신청도 가능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답변시한이 5영업일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소 성실한 재고관리는 물론 현품과 회계장부간 불일치 원인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 협상시에는 본세는 물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포괄하여 감안해야 한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오류 수정기간은 60일(60일 이후라도 자진 신고를 하면 10%의 행정벌금만 부과하나, 세관이 지적할 경우에는 20%)이며, 수출입 신고 취소는 실제 수출입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벌금(가산세)과 1일 0.03%(2016.7월

이전 해당분은 0.05%)의 지연이자가 있다. 또한 고의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탈세 또는 조세사기) 탈루세액에 더해 100~3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과거 10년치까지 추징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부과되는 행정벌금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부과하고 추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3) 세관 세무조사 사후 대처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각종 관리 업무를 맡기고 한국인 관리자는 영업이나 마케팅, 품질관리 등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은 공무원의 권한이 막강하고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협박과 위협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베트남 직원들은 이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세관조사시 베트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자가 반드시 평소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평소 통관업무를 전담했던 직원이 세관원에게 먼저 위반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조사관이 작성한 세무조사 의사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문 등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서류도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 결정자는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15일 기한 내에 세무조사 의사록(세무조사 보고서)에 서명하여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론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분야에 관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의사록 서명 기한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견이 있는 날로부터 계산되며, 권한 있는 전문기관은 세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록 검토는 상황에 따라 최대 30영업일까지 가능(독촉전화가 매우 빈번)하므로 그 사이에 심도 깊게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의사록(세무조사 보고서) 통보 및 피조사자의 의사록 서명(의사록 수령후 5영업일 이내 서명)이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결정 통지서(과세 통지서)가 발행되며, 10영업일 이내 통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피조사자가 30영업일까지도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결정 통지서가 즉시 발행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강제 집행 가능기간이 개시되면, 세관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보증 및 미납 세금·벌금에 대한 국고 납부 서약서를 갖추어야 하며, 미납 세액기준에 따라 3개월(5억동 ~ 10억동), 6개월(10억동 ~ 20억동), 12개월(20억동 이상) 기간 동안 월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시행규칙 제39/2018/TT-BTC 제1조 67항 참조)

불복(세관국, 관세총국, 재무부 등 상급 기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1차 이의제기가 거부될 경우에는 2차 민원제기 가능하며 행정소송도 병행 가능)은 결정 통지서 수령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후에는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제기해야만 하므로 처음부터 회계법인 또는 법무 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